

# PL보험의 특성과 운용 실태



글 | 오세관  
코리안리재보험(주) 특종보험부 과장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 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 1. 관련 주체의 다양성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목적은 보험가입자인 '나'의 피해를 보상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와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PL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나'와 '보험회사' 외에 피해자인 '제3자'가 존재한다. 일례로, 재물보험이 '나'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당사자 보험(First Party Insurance)'이라고 하면, PL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3자 보험(Third Party Insurance)'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L보험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발생한 국가, 피해를 입은 자의 국적 또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의 사고라면 억 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나, 만약 미국 지역에서의 사고라고 하면 배상금이 수십 억 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대상 지역, 즉 제조물의 최종 소비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보험 가입 조건을 달리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법리적인 특성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민법 750조에 정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성립되며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타인의 불법행위와 자신의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그 피해가 제조물에 의한 경우라면 해당 제조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면서부터는 입증책임이 가해자 측으로 전가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즉,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 측에 해당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행 국내법 상 PL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발생한 PL사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 해당 지역, 국가의 법률상황에 따라 모든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즉, 미국의 어느 주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 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속한 지역의 법률기준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PL보험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미국의 법제도 현황에 대해 잠깐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PL보험은 해당 제조물이 어느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판매 및 소비되어 지는가에 따라  
담보지역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재물보험과 같이 담보 물건의 소재지가  
담보지역으로 설정되는 다른 보험과 차이가 있다

#### **가. 각 주마다 다른 법 적용**

물론 연방법이라는 공통법이 있기는 하나 미국의 각 주는 저마다에 맞는 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A주에서 적법한 사항이 B주에서는 위법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나. 배심원 제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서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미국에서처럼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고 판사에게 참고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기실 미국 내에서도 배심원 제도의 폐단 때문에 동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 **다. 승소사례금제도 활성화**

미국에는 변호사가 걸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 소송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에 더불어 승소사례금제도 역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 **라. 무과실책임주의, 엄격책임주의**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과실책임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 **마.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 **제도**

순수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도 피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를 계속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벌금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에 따라 이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여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재판관할권을 가능한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다.

### **3. 사고의 발생 시점과 보험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인 해당 시설을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중에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데 반해, PL보험은 해당 제조물이 제조업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제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 제조업자의 시설에 보관 중에 폭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 제3자의 재물 등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하면 이는 PL보험의 담보 영역이 아니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4. 광범위한 담보지역

PL보험은 해당 제조물이 어느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판매 및 소비되어 지는가에 따라 담보지역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재물보험과 같이 담보 물건의 소재지가 담보지역으로 설정되는 다른 보험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담보지역을 전 세계

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 5. 피보험자격의 확대

PL보험은 특정 제조물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그 제조물이 최종적인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유통업자들(최종 판매자 포함)까지도 보험가입 자격을 갖게 된다. 물론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제조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는 유통업자들이 제조업자에게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특히, 제조업자의 소재지와 판매업자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나 피해자들이 제조업자를 잘 모르는 상태인 경우, 또 제조업자보다는 판매업자가 더 거대 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PL보험은 왜 필요한 것인가?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의 분산에 있다. 즉, 위험이 있기에 보험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자로서 갖고 있는 위험은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은 해당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 및 그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속성을 해할 위험이라고 하겠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기업의 영속성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고 하면 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위험임에 분명하다.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가슴 성형용 실리콘으로 성장세를 구가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경험이 있는 다우코닝사를 예로 든다면 이해가 될까? 그 외에도 수 백억 원 대에 이르는 제조물 하자 관련 배상청구소송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PL보험 가입 현황은 아직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PL보험 수입보험료는 717억 원에 계약건수는 1만 7천여 건으로 전체 약 11만 제조업체 중에 15% 정도만이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상한도액이 발생 가능한 위험 수준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거나 해외 구매자의 요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을 되새겨보면 '장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험료 지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책일 것이다.

구에 의해서 또는 자체 마케팅 용도로 PL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은 국내의 경우 제조물과 관련된 대형사고의 사례가 흔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PL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미국 등 해외지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PL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보험료 납입을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느끼고 이를 가능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을 되새겨보면 '장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험료 지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책일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 볼 때 국내에서의 PL 사고 가능성이 해외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조건을 현실적으로 상향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사전에 대비하여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보험사업자 역시 보험료 수준을 좀더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리콜보험이나 생산물보증보험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성 증대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법 기조의 변화 및 일반 대중의 성향에 따라 위험이 변화되는 보험이다. 현행 법규정 상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가 그리 수월한 편은 아니다. 소송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건이 피해자(제조물의 경우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인정을 강조하는 국민 성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서도 '내 탓이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송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법률시장 개방,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적용,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국민사법 참여제의 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법률 환경은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이끌려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www)